

직원교육 및 회의 일지

일시	2026년 8월 27일 목요일 (16 : 40 ~ 17 : 50)		
강사	유영희 센터장	참석자	21명
교육명	○ 노인인권보호교육 - 노인권리보호 - 노인학대유형 - 예방 및 대응방법	교육방법	대면 교육 ※ 당일 불참자 개별교육 및 자료배부
교육내용	○ 노인인권이란 -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,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. “노인학대”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 『노인복지법 제1장, 1조의 2항의 4호』 ○ 노인권리보호 -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·제도적 근거와 개념,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. ○ 노인학대신고의무자 -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, 의료기관,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,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,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○ 노인학대유형 - 신체적 학대, 언어·정서적 학대, 성적학대, 재정적 학대(착취), 방임, 자기방임, 유기 ○ 예방 및 대응방법 - 노인학대예방지침 배부자료 참고 - 신고방법 : 긴급전화 1389,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, 보건복지콜센터 129		
붙임 1. 교육자료 1부. 2. 참석자 명단 1부. 끝.			

